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5. 8. 29.(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오 의원 외 6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강동오 의원 외 6명
- 제안일 : 2025. 8. 14.
- 회부일 : 2025. 8. 18. (의안번호 : 25-71)

2.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1호)
-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8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9조)
-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 입법예고: 2025. 7. 11. ~ 7. 18. (제출된 의견 있음)

○ 참고자료 첨부

5. 검토보고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개정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명확화(제2조 개정)
 -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명시해 법적 해석의 혼란 방지.
- 주차시설 설치 근거 신설(제8조)
 - 구청장이 지하철역, 변화가 등 이용량이 많은 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 무단방치 금지 및 비용 징수 신설(제9조)

- 이용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구청이 이동·보관 후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 가능.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강화(제10조)

- 불법 방치 관리, 보험가입,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의무화.

③ 타 자치구 운영 사례 비교

자치구	주요 내용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과태료	대여사업자 관리
강남구	PM 주차구역 200여 개 설치	적극 설치	과태료 5만 원 부과	GPS 기반 실시간 이동·반납 관리
성동구	공영주차장, 지하철 연계 PM 거치대 운영	적극 설치	과태료 3만 원 부과	사업자와 MOU 체결, 주 2회 이상 불법주차 단속
관악구	민관 협력 'PM 관리 협약' 추진	일부 설치	별도 과태료 부과 없음	사업자별 보험가입·운영실적 보고 의무
마포구(개정안)	신규 주차시설 설치 및 비용징수 가능	설치 가능	과태료 규정 없음	사업자 준수사항 최초 명문화

④ 개정내용 검토

○ 기대효과 및 장점

- 보도 위 무단방치 이동장치 감소, 보행자 사고 위험 완화 및 체계적 관리 가능.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명문화로 불법방치 및 사고 책임소재 명확.
- 구청의 관리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환수 가능, 재정 부담 완화.

○ 문제점 및 우려 사항

- 과태료 규정 부재로 무단방치 시 실효성 낮을 수 있음
- 주차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 일부 민간 사업자의 보험 미가입, 안내문 미비 등 규정 준수 미흡 우려.

5.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서 시행 중임
- 주차시설 설치 관련 조항을 명시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송파구, 양천구 총 4곳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6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차
량의 이동 및 보관)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4
년까지 마포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 관련 민원 접
수 및 견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 도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방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안 자체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과태료 규정의 부재, 예산 부족 문제, 민간 대여사업자와
의 협조 한계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주민
참여형 관리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운영,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부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
고, 또한 민간 대여사업자와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
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마포구 외 타 지역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책임을 이용자에게 보

다 명확히 부여할 필요성, 공공장소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견인료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및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 규칙 단계에서 세부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현황(2024.11.)

연번	설치 위치	유형
1	대흥역 1번 출구 앞	노면형
2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	노면형
3	아현역 4번출구	노면형
4	망원역 2번 출구(이니스프리 앞)	노면형
5	공덕역 5번 출구(엘리베이터 앞)	노면형
6	광흥창역 5번 출구 인근(한국조폐공사 앞)	노면형
7	신촌역 7번 출구 계단 뒤편 스파오 앞	노면형
8	애오개역 4번 출구(화단 앞)	노면형
9	이대역 5번 출구(화단 앞)	노면형
10	마포구청역 4번 출구(LG전자 앞)	노면형
11	마포한강푸르지오 앞	노면형
12	합정역 9번 출구	노면형
13	합정역 10번 출구	노면형
14	효성 홍익인간오피스텔 (홍익대입구역 3번)	노면형
15	다이소 (홍익대입구역 4번)	노면형
16	홍익대입구역 8번 출구	노면형

□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관련 민원 접수 건수

* 킥보드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 접수 데이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	견인완료	신고시스템 오픈 전	826	294	400
	자체처리		95	482	239
2월	견인완료		802	187	400
	자체처리		42	609	153
3월	견인완료		866	367	400
	자체처리		102	363	194
4월	견인완료		700	400	400
	자체처리		88	378	210
5월	견인완료		679	368	404
	자체처리		206	343	231
6월	견인완료		395	403	396
	자체처리		264	334	285
7월	견인완료	385	390	399	400
	자체처리	480	143	236	383
8월	견인완료	726	400	387	400
	자체처리	497	179	234	265
9월	견인완료	415	398	400	400
	자체처리	302	176	200	322
10월	견인완료	423	400	400	599
	자체처리	258	158	342	627
11월	견인완료	448	395	402	508
	자체처리	176	270	193	640
12월	견인완료	468	398	401	500
	자체처리	161	335	153	385
합계	견인완료	2,865	6,649	4,408	5,207
	자체처리	1,874	2,058	3,867	3,934

* 응답소·상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 접수 데이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년	5	6	14	35	21	21	878	1,228	724	685	629	632	4,878
2022년	922	847	970	789	889	662	599	581	580	568	670	739	8,816
2023년	785	802	738	781	776	746	654	633	616	755	601	560	8,447
2024년	647	558	601	622	649	693	683	824	755	1,267	1,211	980	9,490

□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관련 견인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						385	726	415	423	448	468	2,865
22년	826	802	866	700	679	395	390	400	398	400	395	398	6,649
23년	294	187	367	400	368	403	399	387	400	400	402	401	4,408
24년	400	400	400	400	404	396	400	400	400	599	508	500	5,207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싯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 6. 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3. 10. 24., 2024. 1. 30.>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⑦ 경찰청장은交通安全지표의 개발·조사·작성·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5. 7. 8.] 제147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14, 2017.1.5>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개정 2015.5.14, 2017.1.5>